회사기숙사주방의가스폭발사고를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한 재해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주문】

1 피고가 1997. 4. 1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장의비부지급처분을 각취소한다.

2소송비용은피고의부닦으로한다.

[이유]

1 이 사건의 처분경위

가.소외 1은 천안시 소재의 콘테이너 제조업체인 ㈜○○이하소외회사의 생산계장으로.소외 2는소 외 회사의 관리부장으로 각 근무하던 중 1996. 12. 21. 저녁 소외 회사 대표이사 주최의 송년회를 마치고 다 음날 01:00경 소외 회사 기숙사로 돌아와 주방에서 라면을 끓이기 위하여 가스렌지에 점화를 시도하다 가 누출된 가스폭발로 인한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 송되었으나 소외 1은 같은 달 23. 01:17경 선행사인 화역화상 100%(3도) 중간선행사인 화상성 쇼크 직접 사인 심폐기능정지로 소외 2는 1997. 1, 24, 23:00경 선행사인 화염화상 80%(심부 2~3도) 소화성궤양 및 출혈, 중간선행사인 패혈성 폐렴, 직접사인 패혈성 쇼 크로각사망하였다.

나.이에소외 1과소외 2의 처인 원고들이 피고에게 각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와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1997 4 11 위 맛인들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 부지급처분(이하이 사건 각처분)을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1) 천안시 소재의 소외 회사는 직원 20여명을 고용 하여 콘테이너 박스 및 기타 철구조물을 제조 · 판매 하는 회사이데 회사가 천안시내에서 멀리 벗어난 농 촌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콘테이너 조립식 2층 건물을 지어 1층은 식당 및 주방으로 2층은 소외 1을 비롯한 미혼의 남자 근로자 7~8명의 기숙사로 사용하여 왔 다.소외회사는중년의여자 1명을고용하여식당에서 전체 직원들의 점심, 저녁식사 및 중참을 제공하도록 하였고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근로자들의 아침식사 는전날 미리 준비된 음식을 근로자들이 스스로 데워 먹도록 하였다. 기숙사의 근로자들은 미혼의 건장한 남자들로 식욕이 왕성하였으므로 밤에도 식당으로 내려와 회사가 야참용으로 미리 구입하여 놓은 라면 과커피등을스스로끓여 먹도록허용되었다.

② 미혼인소외 1은 1995.3.2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계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었고 기혼인 소외 2는 1994.9.20. 소외 회사에 입사 하여관리부장으로근무하면서자택에서출퇴근하고 있었다

(3) 1996. 12. 21.에는 15:00경 작업을 종료하고 소 외 회사의 대표이사 주최로 전직원이 천안시 소재 ○ ○식당에서 16:00경부터 20:00경까지 송년회 명 목으로회식을하였다.소외 1.2를비롯한 7~8명의직

원들은천안시소재주점에서 2차로술을마신다음같 은달 22 01:00경 소외 2와 기숙사 거주직원인 소외 1등 5~6명이 회사 기숙사로 돌아왔다. 배가 출출해 진 망인들은 라면을 끓여 먹기 위하여 함께 주방으로 가서 가스렌지에 물을 올려놓고 식당으로 돌아와 물 이 끓기를 기다리다가 다시 주방으로 갔는데 가스렌 지의 점화코크는 돌려져 있었으나 불이 꺼져 있으므 로소외 1이 다시 점화하기 위하여 가스레인지의 점화 코크를 돌리는 순간 평하는 소리와 함께 이미 누출된 엘피지(IPG)가스가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하여 망 인들이 위와 같이 화상을 입고 기숙사 거주의 다른 직 원들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결국 사망하 기에이르렀다.

⑷ 가스렌지가 설치된 주방벽 상단에는 작은 배기 팬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그 위치가 잘못되어 있어 누 출된 가스가 실외로 배출되지 않았고, 주방의 가스렌 지에는 가스누출자동차단기나 가스누출자동경보기 가 설치되어야 하는데도 위와 같은 장치들이 설치되 어 있지 않았으며, 주방에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지 아 니하였는 바,이로 인하여 소외 회사 및 대표이사는 1997. 3.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부터 산업안 전보건법위반죄로 각 벌금 3백만원의 약식명령을 받 았다.

나 법원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 여발생한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라 할 것인 바.이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은 「사업주가 관리하 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익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재해가 작업시간 외의 시간 중에 발생한 때에도 당해 근로자의 자해행 위 또는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위반한 행위 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업무상 재

해로본다.고규정하여사업주가관리하고있는시설 의 결핚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 가발생한경우는업무상재해로보고있다.

② 그러므로 위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 는다음과 같은 사실 즉 사업주인 소외 회사가 관리하 는시설인이 사건 사고 주방벽 상단에 작은 배기팬이 설치되어 있었지만 그 위치가 잘못되어 누출된 가스 의 실외배출이 되지 않았고. 또한 소외 회사가 구입하 여비치한가스렌지에는가스누출자동차단기나가스 누출자동경보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주방에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사고는「사업주가관리하고있는시설의결함또 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 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망인들의 사망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것으로써 업무상 재해 라고할것이다

③ 따라서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고들의 사건 각 유 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하여 부지급 처분을 한 피 고의이사건각처분은모두위법하다고할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소송비 용은 모두 패소자인 피고의 부닦으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